

도·소매업 물품배달 중 리프트에서 떨어짐

재해일자	2018년 8월 30일	재해현황	사망 1명
작업명	물품(쌀포대) 배달업무	재해장소	사업장 리프트 개구부

재해발생 개요



- '18.8.30.(목) 05:00경 식자재 유통 사업장 앞 상품 하차장(1층)에서
- 이동대차를 이용하여 쌀포대를 사업장 내부 창고로 운반하던 중
- 운반경로(하차장-보관창고)에 있던 일반 작업용 리프트의 승강로 개구부에서 지하(높이 2.8m)로 떨어져 사망함
- ※ 리프트에 안전문이 없는 상태에서 운반구가 2층으로 올라가 1층에 개구부가 생김

재해발생 원인

1. 리프트 방호조치 미흡

- 리프트가 이동할 경우 승강로에 개구부가 발생하여 추락위험이 높으나, 승강로 및 화물운반구에 안전문이 설치되지 않음

2. 부적절한 이동통로 사용

- 상품하차장에서 보관창고로 통하는 이동통로가 있으나, 이동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리프트 운반구를 통과하여 추락위험 상존



운반통로로 사용된 리프트

재해예방 대책

1. 리프트 안전문 설치

- 작업자의 떨어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승강로 및 화물운반구에 안전문 설치
- 안전문이 열려있을 경우 리프트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연동구조로 설치

2. 리프트 용도 외 사용금지

- 리프트는 용도에 맞게 중량물의 수직이동만을 목적으로 사용
- 작업자의 보행통로로 사용 금지

3. 일반작업용 리프트 자체 안전점검 실시

- 안전검사 대상 설비가 아니더라도 자체 안전점검을 통해 이상 유무 확인